

# 감 사 위 원 회

##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불철저

**관 계 기 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한다) 감사실에서는 서울의료원 「감사규정」 제3조 제4항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표 1]과 같이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 및 주요 변경’(이하 “제계약”이라 한다) 등으로 정하고 있고,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2,210개 사업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별 실시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계			2015		2016		2017		2018. 4.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의견 제시율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실시 건수	의견 제시
	계	2,210	65	2.9%	471	7	696	10	706	40	337	8
1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3	-	0%	2	-	13	-	25	-	13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	24	2	8.3%	3	-	5	-	14	2	2	-
3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	3	-	0%	1	-	-	-	2	-	-	-
4	매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1,276	35	2.7%	284	1	403	3	415	26	174	5
5	예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 체결 및 주요 변경	670	22	3.3%	134	5	218	2	186	12	132	3
6	결산 가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24	-	0%	17	-	6	-	1	-	-	-
7	중요한 물자 및 자산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	36	-	0%	2	-	-	-	31	-	3	-
8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0	-	-	-	-	-	-	-	-	-	-
9	기타 일상감사 요구 사업	124	6	4.8%	28	1	51	5	32	-	13	-

그런데 일상감사를 실시한 제계약 670개 사업 중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하여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업은 22개로 3.3%에 불과하였다.

감사기간 중에 2018. 1월부터 2018. 4월까지 일상감사한 제계약 66개 사업

(132개 사업 중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계약심사팀에서 중복 의뢰한 63개 사업과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한 3개 사업을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 중 14개 사업 (21.2%)이 [표 2]와 같이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감사담당자의 계약 관련 규정 미숙지와 감사실장의 협조결재에 의한 일상감사 실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어 발주된 사업

연번	사업명	일상감사	계약금액 (천원)	관련 규정 저촉사항
1	◇◇ 용역	2018.1.	1,436,748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가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점산식을 정해야 하는데도 -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정하면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함
2	◆◆ 구축사업	2018.1.	91,000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 의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3	□□ 구매	2018.1.	9,500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 ■ 구매	2018.1.	48,240	
5	△△ 업무위탁 계약	2018.2.	398,102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는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 1년 이상 물류대행 및 창고관리 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6	▲▲ 환경개선공사	2018.3.	145,315	○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약을 정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과업지시서에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명시함
7	▽▽ 점검용역	2018.3.	14,560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2.1억원 미만인 용역은 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 - 최근 10년 이내 200명상 이상 종합병원의 소방시설점검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연번	사업명	일상감사	계약금액 (천원)	관련 규정 저촉사항
8	▼▼ 단가계약	2018.3.	89,197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 등을 필요로 하거나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요건 판단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 입찰참가자격 요건(사업자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함
9	2018년 ∞∞ 단가계약	2018.3.	22,528	
10	2018년 ∞∞ 단가계약	2018.3.	218,773	
11	∈∈ 위탁용역	2018.3.	653,400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사업설명회 참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2	⇒⇒ 서비스 용역	2018.3.	102,465	○ 해당 용역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르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
13	ㄷㄷ검사 단가계약	2018.3.	30,09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전문의 10인 이상 상근기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4	ㄱㄱ 위탁처리용역	2018.3.	810,059	○ 해당 용역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르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조치할 사항

서울의료원 원장은 앞으로 계약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데도 시정·보완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